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이 편람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규칙, 그 외 환경관련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생태환경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최신기술과 기법뿐만 아니라, 국내외 친환경도로 건설에 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담당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2 적용범위

고속도로의 설계 및 건설,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업무처리에 적용하며, 본 편람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1.3 편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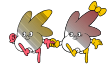
이 편람은 환경복원시설을 비롯하여 항목별 환경저감기법에 대하여 정보전달에 있어 효과적 요소인 시각 자료를 최대한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항목별 환경저감기법은 개요 및 처리공법과 적용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부내용으로 환경관련 법령을 발췌하여 정리하였고, 환경기준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환경저감기법은 해당노선 및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1.4 용어의 정의

-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



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영향요소”라 함은 사업계획 내용중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말한다.

9)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10) “환경인자”라 함은 환경을 구성하는 기초적 요소 (예 : 기후, 지형, 대기질, 수질 등)를 말한다.

